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4730

제출연월일: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육기관 지정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l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u> 지정일부터</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